

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지역 모집 공고

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로컬창업 타운을 확대하고자 신규 설치 계획을 공고하오니,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월 14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

사업개요

사업목적

-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, 로컬창업기업의 성장 등을 지원하는 로컬창업 타운 설치·운영

선정규모 : 2개 후보지역

* 우수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사업내용 : 로컬창업 타운 구축

- (지자체·공공기관) 로컬창업타운 구축공간* 제공(최소 5년 이상)

* 전용면적 500m²(150평) 이상의 물건

- (중기부) 로컬창업 타운으로 리모델링, 해당 시설 운영

* (리모델링) 코워킹스페이스, 회의실, 공유주방, 교육장 등 커뮤니티형 공간

** (프로그램) 교육·멘토링, 창업상담·정보 제공, 경영 전문분야·수출·투자 컨설팅 등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○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

*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운영법」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조에 해당하는 지방 공기업 등

** 기설치 또는 구축 중인 곳은 신청대상에서 제외(세종, 충남, 부산, 대전, 대구, 경기, 충북, 강원, 서울, 경북, 제주)

□ 기본요건 : 아래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< 로컬창업 타운 설치공간 기본요건 >

구분	내용
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용면적 500㎡(150평) 이상의 물건 제시 * 필요 시 건물 및 층별 분리는 가능하며 가급적 1층 소재 등 외부 접근이 유리한 건물 추천 요망
건물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근린생활시설* 용도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물건 * 건축물관리대장 내 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1종
임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방정부·공공기관에서 로컬창업 타운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건(건물, 공간)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장기간 무상*으로 임대 제공 가능 조건 * 영구 무료 임대 또는 최소 5년 무상 사용 가능한 물건으로 제시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방정부·공공기관 소유가 아닌 공공 및 민간 건물 등을 제공 시, 유료 임차가 필요한 경우 소요경비(보증금 및 월임차료)는 신청기관 부담이며, 임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로컬창업 타운으로 사용 안정성이 보장된 물건 ■ 후보 물건에 대해 로컬창업 타운으로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구조안정성 상황을 사전점검하여 구조안정성이 보장된 건물을 우선 추천하고, 구조보강 등 후속조치 필요 시 관련 계획(일정, 소요재원 및 재원확보 방안 등 포함) 등을 제시 ■ 로컬창업 타운으로의 리모델링 등 구축이 '26년 내 완료가능해야 하며 신청기관의 사유로 구축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물건

3

평가 및 선정계획

□ 평가절차

서류검토	①현장조사	②발표평가	③최종선정
제출서류 확인	후보건물 현장조사	발표(PT)평가	2개
소진공	소진공	소진공 (심의위원회)	소진공 (심의위원회)
'26.1.	'26.2. 말	'26.3. 초	26.3. 중순

① (현장조사) 제출서류 검토 후 후보지역 건물을 현장방문하여 사실 여부 확인 등 현장조사 실시

*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 사실 여부 확인 및 공간 입지 적절성 등을 파악하여 대면평가 시 평가자료로 활용

② (발표평가) 내·외부전문가(5인 내외)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, 발표 및 질의·응답 내용에 대한 발표평가 추진

○ 발표 30분(발표 20분 이내, 질의응답 10분 이내) *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○ 대면(PT)평가를 실시하고, 발표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해서 평가 진행

③ (최종선정) 후보지역(후보건물) 최종 선정(2개 이내) 및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·조정

* 선정 건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 규모 확정

□ 선정방향

○ 로컬창업 타운 설치·운영을 위한 입지 및 물건의 적합성, 신청기관의 협업계획, 관심도, 지역경제 파급효과, 예산투입 등을 고려하고,

○ 소상공인 비율, 신규 창업증가율 등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

□ 발표 평가항목(110점 만점 : 정량 20점, 정성 80점, 가점 10점)

구분	평가항목	세부내역	배점														
정량 (광역 단위)	소상공인 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국 사업체수 대비 지역별 사업체수 * 통계청「전국사업체조사」 	10														
	신규 창업증가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별 전년 대비 사업자 수 증가율 * 국세청「국세통계-사업자 현황」 	10														
정성 (광역·기초 단위)	입지/물건의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상권인근, 인구밀집지역 등 지리적 적합성 ■ 로컬창업 기업의 직접도 ■ 광역 지역을 포괄하는 소상공인 창업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 ■ 로컬창업 타운 기능 수행의 적합성 	30														
	지자체의 협업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방정부 및 지역 유관기관의 인력, 자원 등과 로컬창업 타운의 연계방안 * 로컬창업 타운을 활용한 지자체·기관 신규 사업 추진계획 및 기존사업 연계 계획 등 ■ 온라인시장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있는 로컬 창업가 발굴계획 ■ 로컬창업 타운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홍보 방안 ■ 그간 지역 내 로컬창업 기업 육성 성과 ■ 사업기간 내 구축 완료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관 차원의 이행체계 마련 여부 	40														
	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 내 로컬창업 촉진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내 파급효과 	10														
가점	지자체 예산 매칭 (구축 비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자체 예산 매칭 규모에 따라 가점 부여 * 지원예산(7.5억) 대비 지자체 예산(A) 매칭 정도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비율</th> <th>≥100%</th> <th>100%> ≥80%</th> <th>80%> ≥60%</th> <th>60%> ≥40%</th> <th>40%> ≥20%</th> <th>20%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점</td> <td>10</td> <td>8</td> <td>6</td> <td>4</td> <td>2</td> <td>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비율	≥100%	100%> ≥80%	80%> ≥60%	60%> ≥40%	40%> ≥20%	20%>	가점	10	8	6	4	2	0	최대 10
비율	≥100%	100%> ≥80%	80%> ≥60%	60%> ≥40%	40%> ≥20%	20%>											
가점	10	8	6	4	2	0											

4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'26. 1. 14.(수) ~ '26. 02. 19.(금) 18:00

□ 신청접수 : 전자결재 공문 접수(신청기관→ 소진공)

*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(첨부양식 포함)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접수 및 선정평가 실시

- 로컬창업 타운의 구축, 활용 및 사업 개요 등에 관한 설명회를 '26. 1. 22.(목) 진행 예정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명	비고
1	사업 신청서	【서식 1】
2	로컬창업 타운 설치 제안서	【서식 2】
3	사업비 부담 협약서(필요시)	【서식 3】
4	건축물관리대장	
5	건물 안정성 보고서(구조안전진단, 정밀안전진단 등)	

5 유의사항 및 문의처

□ 유의사항

-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며, 반드시 기한 준수
 - *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
- 선정된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함
- 평가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(전자메일 등)하며, 신청기관 미확인·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선정된 기관에서 제공한 건물 내 시설·공간 리모델링 및 장비 구축 등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되, 기존 시설의 철거 및 외관 보수 비용(필요시), 정밀안전진단(필요시) 등의 경우는 선정 기관 자체 부담 필요
- 지방정부 매칭 사업비 사용 방식은 선정 후 협의
- 로컬창업 타운 인프라 구축 이후 매년 입주기업 선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서 직접 주관

□ 문의처

접수처	연락처	이메일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로컬크리에이터육성팀)	042-363-7738	bm@semas.or.kr

참고

로컬창업 타운 개요

- (목적) 지역 유희자산을 활용하여 로컬 창업가를 발굴, 로컬창업 기업으로 육성하는 소상공인 지원 공간 구축
- (내용) 기존 '체험' 공간에서 '교육·체험+운영'의 공유형 공간으로 개편하고, 코워킹스페이스·스튜디오·공방 등으로 구성

< 공간구성 모형도(예시) >

3층	· 미디어 작업실, 공유오피스, 회의실
2층	· 코워킹스페이스, 교육장, 세미나실
1층	· 전시 및 판매공간, 카페, 공유주방 등
B1층	· 공방(메이커스페이스)



- (공간구축) 코워킹 공간, 회의실, 공유주방, 미디어 작업실, 휴게공간 등 교류 및 창업활동을 위한 지원공간 구축(면적 500㎡(150평) 이상)

< 공간 구성(예시) >

구분	공간 활용
코워킹스페이스	오픈식으로 된 열린 공간으로 강연, 공연, 소셜다이닝 등 운영공간
세미나실	스튜디오 형식
회의실	강연이나 소모임 회의, 교육 등이 가능한 공간
공유주방	커피 등 간단한 음식 조리가 가능하며, 소셜다이닝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
미디어 작업실	영상촬영 및 편집, 팟캐스트 등 미디어 작업을 지원하는 공간
체험점포	제품 제작 및 판매실습이 가능한 공간

- (프로그램) 예비 창업자 교육·멘토링, 소상공인 대상 경영전문분야·수출·투자 등 컨설팅, 타운 내 공간을 활용한 판매전 등
- (추진체계) 기관은 부지 및 건물(전용면적 500㎡(150평) 이상)를 제공하고, 중기부·민간은 해당 시설 운영

